

1. 개정이유

개정된 법률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분류 및 타법령 인용 조문 등을 현행화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법령체계 정비(안 제2조)

주거약자용 주택 분류를 법률에 따른 분류 기준에 맞게 일치시키고 타법령 인용조문 등 현행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) 영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」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제2조(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) ① 영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 <u>② 영 제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.</u> <u>1.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u> <u>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</u> <u>나.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</u> <u>2. 제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</u>	<u>제2조(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) 영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」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

하는 사람. 다만, 토지·건물 및 자동차 등 재산의 가액(價額)이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사람은 제외한다.

가.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(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적혀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. 이하 이호에서 같다)이 「통계법 시행령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[태아를 포함한 가구원(家口員)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한다. 이하 이호에서 같다]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

나.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나

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으
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
이 가목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
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
인 사람

③ 제2항 각 호의 제1순위 및
제2순위 중 같은 순위에서 경쟁
이 있는 경우에는 「공공주택
특별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2
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
인을 선정한다.

